

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가합41001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변론 종결 2017. 4. 26.(원고와 피고 C, D, E에 대하여) 2017. 7. 19.(원고 소송수계인과 피고 F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4. 10.부터, 피고 D은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29,621,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2. 26.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피고들이,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F는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고만 한다)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A은 2012. 3. 23. 피고 E, C과 H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A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케이티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2012. 3. 27.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케이티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A이 케이티에 대한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 D은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A이 2013. 4. 30.경부터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26. 케이티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18,486,345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A은 2013. 2. 22. 피고 F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22.접수 제8203호로 같은 해 1.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A은 2016. 8. 23.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70181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 16호증,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구상금 중 연대보증 한도금액인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C은 2016. 4. 10.부터, 피고 D은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케이티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에 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29,621,586원(= 118,486,345원 × 1/4,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케이티에 위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9. 27.부터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인 2015.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채무자 A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F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파산채무자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주장

피고 F는 파산채무자 A에게 정당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 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주례 1, 3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F는 2013. 1. 7.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K에게 부산 남구 L아파트 101동 1601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억 6,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4,600만 원은 2013. 2. 2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F는 2013. 1. 18.(등기부상 매매일자는 2013. 1. 22.이다)

위의 중개로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3,600만 원은 2013. 2.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인 A은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N이 중개한 사실, ④ 피고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3. 2. 22. 자신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한 사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례 1, 3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A의 채무 196,723,210원이 2013. 2. 22. 모두 변제되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6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수 아파트의 2013. 1.경 평균 거래가격은 2억 5,500만 원이 었고, 2013. 1.부터 3.까지 실거래가격은 2억 3,800만 원 ~ 2억 7,300만 원이었던 사실, 7 피고 F는 2013. 2.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 F는 종래 거주하던 L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1억 6,20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으로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피고 F가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 및 매수인모두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였던 점, ③ 피고 F와 A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인 2억 4,600만 원은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 사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이 사건매매계약 당시 파산채무자 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진원, 판사 허성민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 제203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방 2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6층 제601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84.9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남구 [] 대 42531㎡

대지권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42531분의 58.2924 -끝-